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렇게 받으세요



1 위험성평가 인증 신청 대상은?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30명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건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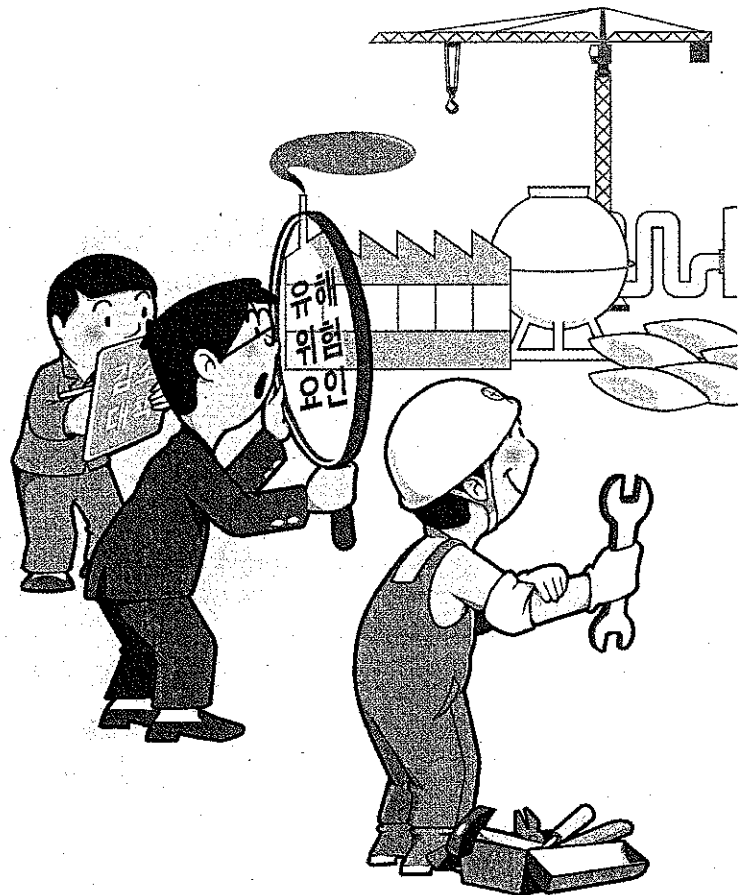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 ②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③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④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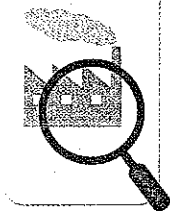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위험성평가 추진 절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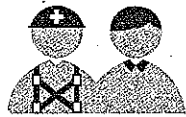
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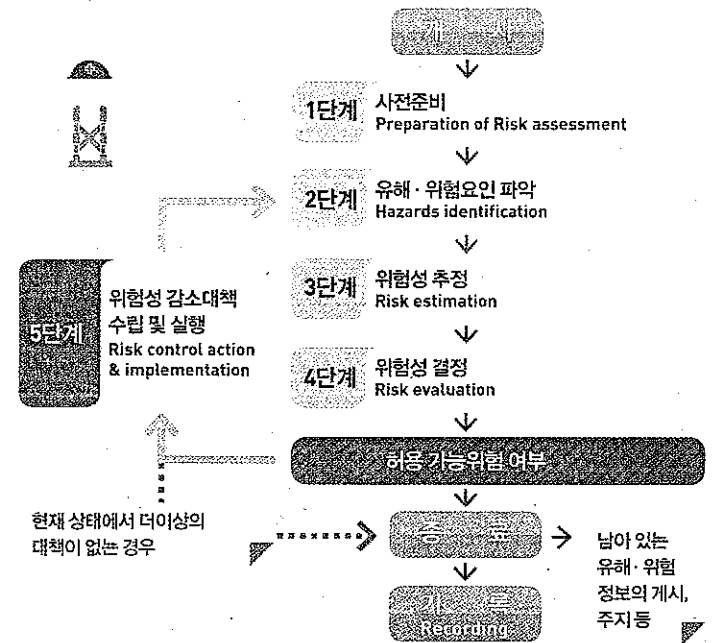
3 위험성평가 관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마당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kosha.or.kr)



- 01 사업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 평가대상 선정, 위험성평가 실시관계자 교육 실시, 평가에 필요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는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0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야 한다.
- 0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0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평법 시기는 이렇습니다

4 "위험성평가를 도와드립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관리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2 위험성평가의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최초평가는 2015년 3월 12일 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 중대산업 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작업 재개전 실시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기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1 위험성평가 자원시스템(KRAS)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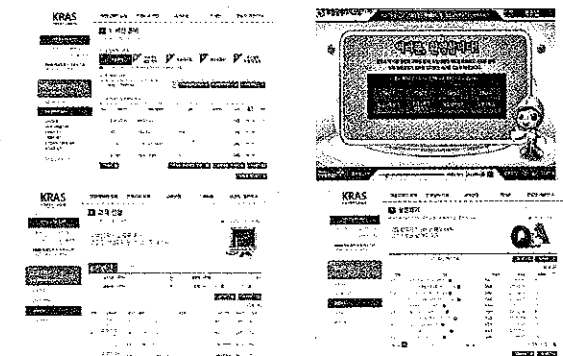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하는 자원시스템입니다.



2 위험성평가 자원시스템 구성은?

- 위험성평가 실시(284개 업종)
- 위험성평가 가상체험(10개 업종)
- 위험성평가 업종별 사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평가담당자 및 사업주 교육 신청 등
- *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기능

3 위험성평가 자원시스템 화면



연세대학교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6711.2844	02.6711.2915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성북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동대문구·도봉구·강북구·종각구·노원구	02.3783.8318	02.3783.8353
강원지사	강원도·경기도 가평군·경상북도 울진군 (철원군 제외)	033.815.1011	033.815.1052
강원동부지사	강원사·속초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고성군·양양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033.820.2511	033.820.2552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26	051.520.0560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26.0523	052.226.0564
경남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말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53	055.269.0513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말양시·양산시	055.371.7524	055.371.750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제외)	062.949.8747	062.949.8712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정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063.240.8533	063.240.852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고창군	063.460.3628	063.460.361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061.689.4952	061.689.4913
전남서부지사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장흥군	061.288.8705	061.288.8712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4	064.797.7522
충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15	032.510.0566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광명시·오산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	031.259.7128	031.259.7180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1.828.1915	031.828.194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	031.481.7517	031.481.755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	031.785.3316	031.785.3355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032.680.6542	032.680.6558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충구·대구·북구·수성구·달성군·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고령군	053.609.0523	053.609.0570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경상북도 고령군·군위군·성주군·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마국가산업단지 제외)	053.650.6833	053.650.681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054.271.2031	054.271.2013
경북북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성주시·문경시·봉곡군·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마국가산업단지 제외)	054.478.8013	054.478.8055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보령시·계룡시·서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	042.620.5612	042.620.5674
충북지사	충청북도	043.230.7123	043.230.7139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041.570.3441	041.570.3405

7

• **사업주교육**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선기관에서 실시

* 교을시 부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 **담당자교육(서비스업종)** 근로자수 100명 미만 서비스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선기관에서 실시

2

담당자교육(제조업 100명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주)경남안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72번길 5-63층	055.277.5000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1(합산동)	053.586.9300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수로 19-1	043.212.4611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9 해산빌딩	02.2046.0484
(주)대한산업안전보건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4 청양빌딩 2층	042.825.6506-7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062
(주)대한안전교육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A 1114호	031.380.6885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7-3 공잔타워 602호	031.411.841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업협력단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1(석강동)	054.740.4934
(주)매경안전철거연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404호	02.974.4655
산업안전기술원 (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64-139 평화빌딩 6층	061.279.1139
(주)산업안전보건진흥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22 진성빌딩 3층	1899.7778
산업훈련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역로 260 원원프라자 301호	070.7006.8750
(주)우리안전기술원	전라남도 순천시 고지5길 3 1(귀곡동)	061.727.1135
제일건설안전기술 (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52 (오류동) 동선빌딩 3층	032.611.6470
한국건설안전기술 (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봉정동 694-9번지 늘푸른빌딩 4층	031.731.9757
한국건설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곡로 524 1(삼성동)	02.518.1501
(주)한국비계기술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동단지1로 50217동204호	051.913.1425
한국산업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404호	02.716.9022
한국산업안전관리협회 (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삼대로 118 1(향대동)	054.253.3632
(주)한국산업위생협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1(내대동) 3811 6층	02.782.338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이엔씨벤처드림타워 3차 16층	02.801.0359
(주)한국안전관리협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7층	061.794.2536
(주)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7마산로 271 (구로동) 대륙빌딩 3층	02.869.0390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51-1 (구포동)	051.3322.114
(주)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역대로 62 (고잔동) 고잔별조빌딩 409호	031.480.8504
한국표준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6층	02.2624.0338
IA 아카데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건선리 547-4	031.668.9937